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계약기간 : 계약일 ~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
- 2) 계약목적 :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
- 3) 월 이용료 및 비급여 : 2026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비용 (15%,9%,6%,0%)
+ 비급여 (오전간식 1500원 + 점심식사 4900원 +오후간식 2,000원 또는 저녁식사 4900원)
○ 주야간 보호 이용 시간별 1일 급여비용 (평일 기준)단위: (원)

구 분	장기요양 1등급	장기요양 2등급	장기요양 3등급	장기요양 4등급	장기요양 5등급 /인지지원
3시간 미만	33,460	30,980	28,590	27,300	25,990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41,820	38,720	35,740	34,120	32,490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56,060	51,930	47,940	46,300	44,650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69,730	64,590	59,640	58,010	56,360
10시간 이상 ~13시간 이하	76,820	71,160	65,750	64,090	62,460 /56,360
13시간 초과	82,370	76,310	70,500	68,860	67,360 /56,360

※ 이용 시간에 따라 야간 가산 및 휴일 가산 적용
(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/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하지 아니한다.)

- 야간 가산 :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를 가산 할 수 있다.
- 목요일 서비스 제공 가산(2014년 10월 1일 시행) : 주1회(최대 48회),1회 3,000월 가산(수급자 부담 없음)
- 휴일 가산 : 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 할 수 있다.

○ 등급별 장기요양 재가 급여 월 한도액 (단위 : 원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00%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120%	2,764,190	2,564,320	1,833,840	1,691,640	1,450,680	676,320

※ 요양 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 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 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른다.
주야간보호 급여를 1일 8시간 이상,월 15회 이상 등 두가지 조건 충족 시 월 한도 120%까지 적용가능함.
(단, 가족요양 서비스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함께 이용시 월 한도액 100% 내에서 사용해야 함.)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 이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 급여	
일 반	15%	
기초 수급권자	0%	
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(희귀난치성,만성질환자 저소득층 (본인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40% 감경자	9%
	60% 감경자	6%

월 이용료 = (1일 수가 X 이용 일수 X 본인 부담율 15%)+비급여 항목(오전 간식,중식,오후간식or석식)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4)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- <권리> -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-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내릴 권리
 -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<의무> -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
 -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납부의무
 -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의무
 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
 - 장기요양급여 변경 시 안내할 의무와 이용수칙 준수의무
 - 노인학대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

5)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- ②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③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
- ④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
- ⑤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
- ⑥ 계약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- ⑦ 본인 부담금 및 기태 수납비용 3개월 미납 시
- ⑧ 장기요양보험 등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- 6)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제 10조 라항 3호에 따라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,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한다. 다만,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기관은 제 10조 마항 3호에 따라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해지를 진행한다.

7)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-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- ② 요양수가가 변경되었을 때
- ③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였을 때
-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재작성 및 수급자(보호자) 1부, 기관 1부씩 각각 보관